

중앙정부 및 국회, 주요 언론 복지정책 동향

01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

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제공

- ☞ (사업개요) 고용보험은 평상시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기금으로 원치 않는 실업을 한 경우 실업급여 등으로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
- * '21.7.1. 적용직종 : 보험설계사, 신용카드 회원모집인, 대출모집인, 학습지 방문강사, 교육교구 방문강사, 택배기사, 대여제품 방문점검원, 가전제품 배송·설치기사, 방문판매원, 화물차주, 건설기계조종사, 방과후 학교강사(초·중등)

☞ (지원내용)

1. 적용범위	
적용대상	-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
주요 적용제외	- 노무제공계약 월평균소득 80만원 미만자('22.1월부터 합산 가능) - 만65세 이상단, 만65세이전부터 고용보험 계속 가입중인 자는 적용 대상)
2. 보험료율 및 수급요건	
보험료율	- 실업급여 1.4%(특고 0.7%, 사업주 0.7%)
수급요건	기여요건 -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
	이직사유 - 비자발적 이직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감소에 따른 이직 포함)
	기타 -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
3. 구직급여 지급	
지급수준	- 이직 전 12개월 보수총액 기준으로 산정한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%
지급기간	- 120일~270일
소득활동 인정	- 수급기간 중 소득 발생시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고 구직급여 지급
4. 출산전후(휴가)급여 지급	
기여요건	- 출산(유산·사산)일 직전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충족
지급수준	-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%
지급기간	- 90일(다태아의 경우 120일)

*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▶ 분야별정책 ▶ 고용안전망 ▶ 전국민고용보험



02 코로나19 예방접종 참여 독려 대국민 홍보



접종대상	사전예약시기	접종 일시	백신 종류	접종 기관
8월 접종대상자 중 미접종자	60세~74세 어르신 (화이자 백신 사전예약 안내 문자메시지 수신자 대상)	6월 23일 0시~ 6월 30일 18시	화이자	예방접종센터
	30세 미만 사회취약인력 등 (6월 예약 조건의향에 따른 미예약자 등)	6월 28일 0시~ 6월 30일 18시		
교육·보육 종사자, 대입수험생	고교 3학년 및 고교 교직원	관할 교육청과 예방접종센터 간 일정 조율 후 학교별 접종	화이자	예방접종센터
	교육·보육 종사자 (어린이집·유치원, 중·고교 교직원 및 돌봄인력)	7월 중		위탁의료기관
	고교 3학년 제외 기타 대입수험생 (재수생 등 및 학교 방 형소인 등 대입수험생)	7월 말		
50대 장년층 (50세~59세)	55세~59세	7월 12일 주	백신 도입량과 시기 고려하여 확정 예정	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
	50세~54세	7월 19일 주		
40대 이하* (18세~49세)	8월 ~	우선 접종자의 접종이 완료되는 8월 이후	백신의 도입량 및 시기를 고려하여 본인 선택에 따라 결정 후 접종	

* 40대 이하는 접종을 희망하는 사람부터 사전예약 순서에 따라 접종 실시

[접종 사각지대 해소 계획]

- 신체적·경제적·사회적 제약으로 접종 참여에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대상군에 대한 맞춤형 대책 마련
- 지자체별 특성 및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지역별 자체 계획에 따라 예방접종 시행
- 24시간 가동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한 자체 접종 통해 종사자 접종편의 도모



성남시 및 시의회, 경기도(도의회) 복지정책동향

01 24시간 노인상담전화 · 중장년 마음돌봄 전화상담 운영



새로운 경기

공정한 세상

정기도사회서비스팀

어르신들의 마음어스리는 그 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

어르신! 믿으세요? **24시간 노인상담**

☎ 상담 : 1833-2255 (이리오오)

365일 24시간 심리상담
나는 어떻게 고민이여?
 - 마음의 두통하거나 불안하고
 - 때 살아가는 데나 생각이 들고
 - 죽음이나 자살을 생각하고
 - 앓을 수가 어려워
 -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렵다

비대면 상담
 - 전문심리상담
 - 위기상담
 - 복지정보제공상담 및 기관연계

☎ 상담 : 1833-2255 전화주세요

정기도사회서비스팀
경기도노년종합상담센터

경기도 중장년 마음돌봄 전화상담

50세부터 64세까지

☎ 031-269-5064

혼자서 힘 드세요?
 상담전문가와 함께 영인 마음을 풀어가 보세요
 경기 중장년 마음돌봄 상담으로
 함께 합니다

정기도사회서비스팀
경기도노년종합상담센터

24시간 노인상담전화 ☎1833-2255

중장년 마음돌봄 전화상담 ☎031-269-5064

02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

새로운 경기

공정한 세상

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의 길은 계속되어야 하기에

경기도가 준비한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

2021년 상반기 교통비 신청 안내 **2021. 7. 1 목 - 8. 16 일**

신청 자격 주민등록상 거주자가 경기도인 만 13-23세 청소년 중 경기버스 이용 실적이 있는 자

신청 방법 PC 및 모바일 앱 (www.gbuapb.kr)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

지원 내용 연간 12만원(반기별 6만원)한도 내에서 경기버스 실사용액의 100% 지원

신청 방법

- 1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 접속**
- 2 로그인**
- 3 교통카드 등록**
 ※ 선불카드(머니, 캐시비 등) 또는 후불교통카드 (청소년 본인 명의만 인정)
- 4 지역화폐 등록**
 성남, 시흥, 김포 제외 28개 시군
 등록된 지역화폐 소유자 휴대폰에 모바일 앱 설치 후 회원가입 후 (성남·시흥 : "지역상품권 Chak" / 김포 : "착한페이") 해당 시 지역화폐 가입(성남사랑 상품권, 시흥화폐 시루, 김포페이)
- 5 지원금 신청**

유의 사항

- *지역화폐사에 등록된 회원정보와 대상자 신청 정보가 반드시 일치해야만 정상적으로 환급 가능
- 정상적인 환급을 위하여 연락 가능한 핸드폰 번호를 꼭 입력해 주세요
- 후불 교통카드는 카드사에 교통카드 번호를 문의해 주세요
- 지역화폐 번호가 유효한지 확인해 주세요 (성남, 시흥, 김포는 각 지역화폐 앱 사용)

문의 |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콜센터 1577-8459

사회복지 주요 행사 및 관련 정보

▣ 성남시 사회복지사협회 2021년 회원선물 안내

- ☞ (신청대상) 2021년 연회비 납부 회원(2021년 신규회원 제외)
- ☞ (제공방법) 신청제&선택제(본인이 원하는 선물을 직접 선택하여 신청)
- ☞ (선물종류) 다이어리 / 탁상달력 / 모바일상품권 중 택1
- ☞ (신청기간) 2021. 07. 19(월) ~ 2021. 09. 30(목)
- ☞ (신청방법) <https://vo.la/kGgTa> 구글독스로 본인이 직접 신청
 - * 2021년 회원선물은 회원 본인이 직접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.
 - * 신청기간 이후 선물변경은 불가입니다.
- ☞ (문의처)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 ☎031-757-7547



▣ 성남시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

- ☞ (신청대상) 청년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무주택 미혼 1인 세대주
 - * 관내로 전입 예정인 경우, 대출실행 1개월 이내 주민등록 전입 완료하여야 함
- ☞ (신청기간) 2021. 7. 5.(월) 09:00 ~ 2021. 7. 30.(금) 18:00
- ☞ (신청방법) 지원신청서 전산입력,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서약서 등 필요한 서류 첨부
- ☞ (사업규모) 50호
- ☞ (선정방법) 지원인원이 많을 경우 평가기준표를 통해 고득점순 선발
 - * 소득수준(50%) + 전용면적(30%) + 성남시 거주기간(20%)
- ☞ (자격요건)
 -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으로 본인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
 - 학생, 취업준비생 등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없는 청년으로 부모소득 7천만원 이하인 자
- ☞ (지원내용) 대출 최대 5천만원(임차보증금의 90%) 및 이자(연 3% 이내)
- ☞ (대출기간) 2년 만기 일시상환(2회 연장 가능, 최대 6년까지)
- ☞ (대상주택) 임차보증금 1억5천만원 이하, 월세 70만원 이하, 전용면적 60㎡이하 모두 만족하는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
 - *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, 불법건축물, 다중주택,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
- ☞ (문의처) 성남시 청년정책과 ☎ 031-729-8503, 농협 성남시지부 ☎ 031-740-6644



▣ 2021년 특수고용노동자 및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

- ☞ (지원대상)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
 - 성남시에 거주 또는 성남시 사업체에 근무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*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
 - * 산업해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①항에 따른 특수형태
- 보험설계사 / 대출모집인 / 신용카드모집인 / 방문판매원 / 대여제품 점검원 / 기전제품 설치원 / 방문강사 / 골프장캐디 / 택배기사 / 퀵서비스기사 / 대리운전기사 / 건설기계조종사 / 화물차주 / 소프트웨어프리랜서
-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전속계약 등을 체결한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사업체
 -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인 활동 증명이 등록되어 있으며,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성남시 거주 예술인
- ☞ (지원내용)
 - 2021년 납부한 산재보험료(노동자, 예술인 부담금) 90% 지원
 - 2021년 납부한 산재보험료(사업주 부담금) 90% 지원
 - * 사업주 부담금 지원은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사업체에 한함
 - * 예술인 산재보험료 본인 월납부액이 17,090원 이상인 경우 17,090원의 90% 지원
 - ☞ (지원범위) 2021년 1월 이후 납부내역을 소급하여 지급
 - ☞ (지원방법) 산재보험료 고지·납부내역 확인 후 지원 대상자로 최종 결정된 지원자 및 사업주에 대해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
 - * 타 유사 사업 (예: 경기도 배달노동자, 예술인 신규가입자 산재 보험료 지원)과 중복 지원 불가
 - ☞ (신청시기) -(1차) 2021. 7.19. ~ 8. 13. ▶ 2021년 1월 ~ 6월분 신청
 -(2차) 2021.10.18. ~ 11.12. ▶ (1차 기신청자) 2021년 7월 ~ 9월분 신청
 (1차 미신청자) 2021년 1월 ~ 9월분 신청
 - ☞ (신청방법)
 - 온라인 : 성남시청 홈페이지(<https://www.seongnam.go.kr>)
 - ※ PC 또는 모바일 동시 접수 가능
 - 방문접수 : 성남시청 7층 고용노동과 사무실(토·일요일·공휴일 제외, 12:00~13:00 제외)
 - 지원 희망자 본인 또는 대리(사업주) 접수 가능
 - ☞ (문의처) 성남시 고용노동과 노동권익팀 ☎ 031-729-8732~4

